

# 2014년 폭염대책 추진 미흡사항

(언론 등 지적사항 포함)

## ① 무더위쉼터 운영

- ☞ 쪽방촌 거주자 등은 열대야가 심한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되는 무더위 쉼터가 절실, 탄력적 운영 필요
- ☞ 쉼터 냉방비 지원 재해구호기금 활용 저조
- ☞ 26년 된 낡은 에어컨, 벽에는 곰팡이로 이용하기 어려워...
- ☞ 관공서 민원실 무더위쉼터, 의자만 1~2개 비치, 업무부담으로 이용기피
- ☞ 에어컨 작동하지도 않고, 선풍기 1대만으로 노인들 땀 식혀...
- ☞ 주민센터 무더위쉼터, 상담실을 급조한 시설에 에어컨 한 대만 덩그러니, 에어컨 미가동으로 실내온도 30℃ 육박
- ☞ 폭염주의보가 내린 주말 동안 무더위쉼터(주민센터) 운영하지 않아...
- ☞ 간판 미부착, 폭염 행동요령 등 미비치
- ☞ 24시간 운영된다는 무더위쉼터, 실제 운영하지 않아...

## ② 재난도우미 운영

- ☞ 이·통장 등 자원봉사 재난도우미 형식적 지정, 재난도우미로서의 역할 미숙지

## 무더위쉼터 지정·운영 관리 지침

### 1. 목 적

-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폭염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·건강 관리할 수 있게 무더위 쉼터를 효율적으로 지정·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2. 관련근거

- 국민안전처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 시행하는「폭염 대비 종합대책」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지정·운영 관리

### 3. 주 관 : 시장·군수·구청장

### 4. 운영기간 : 매년 5. 15 ~ 9. 30 (폭염대책기간)

- ※ 단, 폭염 장기화로 운영기간외 폭염특보 발령시 한시적 운영

### 5. 쉼터기능

- 폭염발생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·건강관리할 수 있게 무더위 쉼터로서 기능을 유지해야 함.

### 6. 이용대상

- 쉼터 이용대상은 폭염발생시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(이하 “폭염에 취약한 사람” 이라 한다),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, 이들을 보호·관리하는 재난도우미

## 7. 지정기준

- 쉼터는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접근이 양호한 장소 지정
- 도시·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
  - 노인여가복지시설(노인복지관, 경로당, 노인교실, 노인휴게소), 복지회관,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
  - 보건소, 주민자치센터,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
  - 정자, 공원, 종교시설(교회), 금융기관 등
- 쉼터의 이용대상자 수를 감안해 적절한 규모로 지정
  - 쉼터 이용면적은 1인당 4㎡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,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으면 이를 포함해 여유있게 지정
  - 쉼터에는 필요시 재난도우미가 방문해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·홍보를 위한 별도 공간 확보
- 쉼터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되 산사태, 지진해일, 상습 침수 등 재해위험이 있는 곳에는 지정하지 않는다.
- 쉼터를 지정하려면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,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
- 쉼터를 지정시 노인들의 보호·건강관리를 위한 장소·규모의 적정성, 에어컨 구비 여부, 야간 및 주말·휴일 이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지정
  - 경로당, 마을회관 등은 에어컨 구비 여부를 우선 고려하되,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
- 쉼터는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처럼 사무공간이 좁고 불편한 장소에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

## 8. 운영 관리기준

- 쉼터는 관리책임자를 시·군·구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 담당공무원 각 1명씩 2명, 읍·면·동사무소(주민자치센터) 공무원 1명 지정
  - 읍·면·동사무소(주민자치센터) 관리책임자는 평시 주 1회 점검, 폭염 발생시 매일 점검하고,

- 시·군·구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·감독
  - . 냉방기 가동여부,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, 폭염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·홍보 점검
  - . 폭염발생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관리 점검
- 쉼터 지정시 관리대장에 작성 비치하고 점검내용을 기록관리
  - 지정결과는 관할 시·도를 거쳐 소방방재청에 통보
    - ※ NDMS 시·군·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
- 쉼터에는 폭염발생시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비상시 응급조치를 위해 냉방기와 비상구급품 등을 구비
  - 무더위에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선풍기,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갖추고 필요시 냉장고, 가구 등도 구비
  - 쉼터에는 적정 실내온도(26℃)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, 야간, 주말·휴일에 이용이 가능한 쉼터는 열대야시, 주말 및 휴일에 적극적으로 개방 운영
- 냉방기 및 냉방 전기료 지원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
  -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,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예산 편성
- 쉼터의 위치·이용안내를 위해 각종매체를 활용 주기적 홍보
  - 전광판·마을애프·가두방송·반상회·리플렛·홈페이지 등
  - 무더위쉼터 지도 등 제작·배포
- 폭염대비 행동요령, 일사병 등 폭염질환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
  - 특히, 고령자가 알아보기 쉽게 활자크기 등 조정
-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활용·복지지원·건강관리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운영
- 무더위 쉼터에 간판을 부착하되, 민간건물은 소유주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부착

< 별표 1 >

## 무더위쉼터 간판

가로형	세로형
	

### <간판 설치 요령>

1. 규격 : 시설유형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
  - 가로 표준형 : 1.0m(가로) × 0.4m(세로)
  - 세로 표준형 : 0.4m(가로) × 1.0m(세로)
2. 재질 : 철이나 알루미늄, 나무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
3. 색상
  - 가. 간판 바탕 : 어두운 노랑
  - 나. 글씨 : 무더위 쉼터는 파랑, 문의는 검정색
  - 다.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